

第256回国會
(定期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12月1日(木)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계속)
3.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4.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5.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國慶日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계속)
8. 國慶日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계속)
9. 國慶日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地方自治團體에 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계속)
17.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계속)
18.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계속)
19.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
2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계속)
21.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 관한특별법안(계속)
22. 주한미군이전에 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 위한특별법안(계속)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24.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7.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
28. 地方自治法 一部改正法律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審査된案件

- 의사일정 상정의 건 3
1.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
 2.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김명주·고조흥·정문현·이성

권 · 임인배 · 박세환 · 이해봉 · 황우여 · 엄호성 · 김희정 · 정병국 · 류근찬 · 임종석 · 이상배 · 김양수 ·곽성문 · 김태환 · 김재홍 의원 발의)(계속)	3
3.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정성호 · 이광철 · 임종인 · 양형일 · 김우남 · 제종길 · 정봉주 · 김태홍 · 노현송 · 강기정 · 김태년 · 조경태 · 박기춘 · 최재성 · 심재덕 · 전병헌 · 한명숙 의원 발의)(계속)	3
4.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이용희 · 노현송 · 우제항 · 양형일 · 심재덕 · 박기춘 · 원혜영 · 홍미영 · 조성래 · 유인태 · 정진석 · 유기준 · 서병수 · 이인기 · 고흥길 · 김정권 · 김기춘 · 우원식 · 윤호중 · 오영식 · 김태홍 · 염동연 · 강기정 · 지병문 · 민병두 · 우윤근 · 노응래 · 이강래 · 이목희 · 임종석 의원 발의)(계속)	3
5.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
7.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신기남 · 구노희 · 권철현 · 김낙순 · 김덕규 · 김맹곤 · 김영주 · 김우남 · 김원웅 · 김재홍 · 김충환 · 김태홍 · 김한길 · 김현미 · 김형주 · 노응래 · 노현송 · 노회찬 · 단병호 · 류근찬 · 문학진 · 민병두 · 박기춘 · 박명광 · 박병석 · 박상돈 · 박진 · 박찬석 · 박찬숙 · 복기왕 · 손봉숙 · 송영길 · 신국환 · 심재철 · 안명옥 · 엄호성 · 오영식 · 우상호 · 우윤근 · 우제항 · 유기준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희 · 유재건 · 이미경 · 이상경 · 이상민 · 이영순 · 이종걸 · 임종석 · 임종인 · 임채정 · 장복심 · 장향숙 · 전병헌 · 정덕구 · 정병국 · 정성호 · 정청래 · 조배숙 · 천영세 · 천정배 · 최용규 · 최재천 · 최인기 · 홍미영 의원 발의)(계속)	5
8.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규택 · 이재오 · 엄호성 · 이경제 · 이인기 · 정병국 · 박찬숙 · 류근찬 · 박순자 · 고진화 · 이군현 · 허천 · 정화원 · 진수희 의원 발의)(계속)	5
9.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0.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발의)(노현송 의원 외 143인 발의)(계속)	5
11.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12.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13. 責任運營機關의設置 · 운영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우제항 · 홍미영 · 최재성 · 박기춘 · 염동연 · 심재덕 · 우제창 · 권오을 · 양형일 · 정장선 · 원혜영 · 정봉주 · 곽성문 의원 발의)(계속)	6
14. 責任運營機關의設置 · 운영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15. 責任運營機關의 設置 · 운영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16.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17.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맹형규 · 김태홍 · 박세환 · 배기선 · 김석준 · 배일도 · 엄호성 · 황진하 · 이계진 · 손봉숙 · 김충환 · 정성호 · 김영춘 · 김재원 · 이인기 · 이해훈 · 박재완 · 심재철 · 이병석 · 안상수 · 이해봉 · 고조홍 · 이상열 · 김효석 · 염동연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6
18.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지병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6
19.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	6
2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 · 정성호 · 강봉균 · 강성중 · 곽성문 · 김명자 · 김성곤 · 김영춘 · 김원웅 · 김진표 · 김태년 · 김희선 · 문병호 · 문학진 · 박기춘 · 박세환 · 박순자 · 배기선 · 백원우 · 심재덕 · 안민석 · 염동연 · 오제세 · 우윤근 · 원혜영 · 유선호 · 이근식 · 이경제 · 이계진 · 이기우 · 이미경 · 이상락 · 이시중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기 · 이종걸 · 이철우 · 임종인 · 임채정 · 전재희 · 정세균 · 정장선 · 조정식 · 최성 · 최재성 · 한명숙 · 허천 · 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6
21.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關한특별법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이재창 · 유승민 · 진수희 · 이시중 · 이상득 · 고흥길 · 최병국 · 정장선 · 신국환 · 김재윤 · 황진하 · 안상수 · 정중복 · 이인기 · 허	

천 · 최용규 · 이군현 · 김재원 · 박순자 · 정몽준 · 엄호성 의원 발의)(계속) 6

22.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김병호 · 엄호성 · 권철현 · 박형준 · 서병수 · 정화원 · 정의화 · 이성권 · 정갑윤 · 안경률 · 장향숙 · 김형오 · 김양수 · 이재웅 · 박승환 · 박계동 의원 발의)(계속) 6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6

24.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10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10

27.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 · 박승환 · 허태열 · 엄호성 · 이인기 · 이해훈 · 정화원 · 서병수 · 김희정 · 박형준 · 이재웅 · 권철현 · 김정훈 · 김병호 · 정형근 · 박근혜 · 강재섭 · 김덕룡 · 최구식 · 이성권 · 김형오 · 안경률 · 김무성 · 정의화 · 조성래 · 조정태 의원 발의) 10

28. 地方自治法 一部改正法律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 · 김양수 · 허태열 · 김형오 · 박형준 · 권철현 · 엄호성 · 안경률 · 서병수 · 정형근 · 김정훈 의원 발의) 11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이용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이용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산안 부수 법안이 아닌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들은 대부분 지난 9차 회의 때 사전 동의를 받은 법안들입니다마는 일부는 새롭게 상정되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사진행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닌 법안들을 상정해서 심사해야 될 상황인데 그때마다 계속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오늘 일괄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의사진행상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 · 김명주 · 고조홍 · 정문현 · 이성권 · 임인배 · 박세환 · 이해봉 · 황우여 · 엄호성 · 김희정 · 정병국 · 류근찬 · 임종

석 · 이상배 · 김양수 ·곽성문 · 김태환 · 김재홍 의원 발의)(계속)

3.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정성호 · 이광철 · 임종인 · 양형일 · 김우남 · 제종길 · 정봉주 · 김태홍 · 노현송 · 강기정 · 김태년 · 조정태 · 박기춘 · 최재성 · 심재덕 · 전병헌 · 한명숙 의원 발의)(계속)

4.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 · 이용희 · 노현송 · 우제항 · 양형일 · 심재덕 · 박기춘 · 원혜영 · 홍미영 · 조성래 · 유인태 · 정진석 · 유기준 · 서병수 · 이인기 · 고흥길 · 김정권 · 김기춘 · 우원식 · 윤호중 · 오영식 · 김태홍 · 염동연 · 강기정 · 지병문 · 민병두 · 우윤근 · 노웅래 · 이강래 · 이목희 · 임종석 의원 발의)(계속)

5.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0시25분)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제4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최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최규식 법안심사소위원회 최규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제 하루 온 종일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을 포함하여 우제항 소위원장, 강창일 위원, 노현송 위원, 이인기 위원, 유기준 위원, 김정권 위원 등 전원이 참석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도의 오·남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부적격자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시행령 마련 등을 위해 시행시기를 2006년 7월 1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건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강창일 의원, 그리고 최규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경사까지 할 수 있는 근속승진을 경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승진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순경에서 경장은 6년 이상, 경장에서 경사는 7년 이상, 경사에서 경위는 8년 이상 해당 계급 근속자로 하며, 셋째 정원의제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넷째 시행은 2006년 3월 1일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안으로 마련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중 괄호의 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것이 조문 정리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반영된 것인바, 이를 정정하여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에 전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최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법안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경찰청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오랫동안 경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사기도 양양되고 할 것입니다. 단지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아마 첫째, 둘째 해에는 무더기로 승진사태가 있으므로 해서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실지로 됩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첫째, 둘째 해 정도에는 큰 무리 없이 이 법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허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석 위원 경찰청장님, 제가 근속승진 확대시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내년도 소요 256억 원은 우선 예비비로 충당하고 2007년 이후의 소요 예산은 근속승진 현원을 정원에 포함시켜서 인건비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네요.

그런데 현재의 현원도 정원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원도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인데 과연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근속승진 현원이 정원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경찰청장 허준영 이번 법안에 정원의제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

○정진석 위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 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장 조창현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지 않은 지적과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위원님들께서 공직사회를 염려해 주시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우려의 뜻을 명심하면서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고위공무원단체도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 개혁으로 정부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조창현 위원장님, 그동안 고위공무원단체도 도입과 관련해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들께 인사하시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제4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5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경찰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허준영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위까지 근속승진이 확대된다면 일선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국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철저히 보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허준영 경찰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경찰청으로서의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속승진에는 국민들의 혈세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께 열심히 크게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허준영 청장을 비롯한 경찰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청장께서도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주관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관이 대신 출석하셨는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

원 대표발의)(신기남·구노희·권철현·김낙순·김덕규·김맹곤·김영주·김우남·김원웅·김재홍·김충환·김태홍·김한길·김현미·김형주·노웅래·노현송·노희찬·단병호·류근찬·문학진·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진·박찬석·박찬숙·복기왕·손봉숙·송영길·신국환·심재철·안명옥·엄호성·오영식·우상호·우윤근·우제항·유기준·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재건·이미경·이상경·이상민·이영순·이종걸·임종석·임종인·임채정·장복심·장향숙·전병현·정덕구·정병국·정성호·정청래·조배숙·천영세·천정배·최용규·최재천·최인기·홍미영 의원 발의)(계속)

8. 國慶日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

원 대표발의)(이규택·이재오·엄호성·이경재·이인기·정병국·박찬숙·류근찬·박순자·고진화·이근현·허천·정화원·진수희 의원 발의)(계속)

9. 國慶日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

원 발의)(노현송 의원 외 143인 발의)(계속)

11.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3. 責任運營機關의設置 · 운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우제항 · 홍미영 · 최재성 · 박기춘 · 염동연 · 심재덕 · 우제창 · 권오을 · 양형일 · 정장선 · 원혜영 · 정봉주 · 광성문 의원 발의)(계속)
14. 責任運營機關의設置 · 운영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責任運營機關의 設置 · 운영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7.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맹형규 · 김태홍 · 박세환 · 배기선 · 김석준 · 배일도 · 엄호성 · 황진하 · 이계진 · 손봉숙 · 김충환 · 정성호 · 김영춘 · 김재원 · 이인기 · 이해훈 · 박재완 · 심재철 · 이병석 · 안상수 · 이해봉 · 고조홍 · 이상열 · 김효석 · 염동연 · 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18.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지병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19.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
2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 · 정성호 · 강봉균 · 강성중 · 광성문 · 김명자 · 김성곤 · 김영춘 · 김원용 · 김진표 · 김태년 · 김희선 · 문병호 · 문학진 · 박기춘 · 박세환 · 박순자 · 배기선 · 백원우 · 심재덕 · 안민석 · 염동연 · 오제세 · 우윤근 · 원혜영 · 유선호 · 이근식 · 이경재 · 이계진 · 이기우 · 이미경 · 이상락 · 이시중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기 · 이종걸 · 이철우 · 임종인 · 임채정 · 전재희 · 정세균 · 정장선 · 조정식 · 최성 · 최재성 · 한명숙 · 허천 · 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21.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이재창 · 유승민 · 진수희 · 이시중 · 이상득 · 고흥길 · 최병국 · 정장선 · 신국환 · 김재윤 · 황진하 · 안상수 · 정종복 · 이인기 · 허천 · 최용규 · 이

군현 · 김재원 · 박순자 · 정몽준 · 엄호성 의원 발의)(계속)

22. 주한미군이전때다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김병호 · 엄호성 · 권철현 · 박형준 · 서병수 · 정화원 · 정의화 · 이성권 · 정갑윤 · 안경률 · 장향숙 · 김형오 · 김양수 · 이재웅 · 박승환 · 박계동 의원 발의)(계속)
2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10시38분)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제23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의 건별 명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인기 위원님 나오셔서 우선 의사일정 제7항~제16항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인기 법안심사소위 이인기 위원입니다.

먼저 신기남 의원과 이규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국경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국가기념일인 한글날을 국경일로 추가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함에 따라 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만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여 국경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현송 의원이 발의하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송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지방에 이양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 발생에 따른 정산 규정을 보완하였고, 부동산교부세의 재원도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정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시행시기를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2006년 7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소방본부와 부산소방학교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등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국가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2006년 7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제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또한 정부가 제출한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 시행령에서 규정해 온 심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며,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책임운영기관을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며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목표를 부여하고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두 법안의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어 우제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되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지적이 없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만 향후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연구원의 정관 개정 시에 시·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당연 취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히 노력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인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9항 국경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15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최규식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최규식 법안심사소위원회 최규

식 위원입니다.

먼저 맹형규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과 지병문 의원 외 3인이 소개한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은 동일한 취지의 안건인바,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은 현행 11월 3일 ‘학생의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고, 동 기념일 행사를 교육부총리가 주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행하도록 할 것을 주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이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에관한특별법안, 김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3건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상정되었지만 무상양여 등 여러 쟁점들이 국방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어 정부 측의 종합적인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정부 측에서 먼저 의견을 조정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이후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까지 다각적인 의견 조정과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관계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적용 대상지역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하여 세 안 중 가장 광범위한 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둘째, 반환 공여지의 무상양여 및 매입경비 등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반환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 재원 부족으로 기지이전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며,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허용 시 다른 자치단체

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국유지의 무상양여·사용허가 조항을 도로, 공원, 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해당 지역에 수도권정비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감안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 적용을 평택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신설 등에 관한 특례조항 정도로 수정하여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에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발제한구역 존치 필요성이 없으면 정식 절차에 따라 해제하거나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활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조항은 수용하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지역투자 유발효과가 있다고 보이므로 내국업체 입주 허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반회계를 통해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회계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견이 없는 사항은 원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희 최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래 위원님!

○조성래 위원 대안 14조 1항 2호에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취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당초에는 무상양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양여는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계속해서 무상양여 규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상 여러 가지 부담이 와서……

무상양여를 해 주는 것이나 국가에서 일부 국비보조를 해 주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보다는 국비로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것입니다.

○**조성래 위원** 결과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가 무상양여와 같다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효과는 같지만……

○**조성래 위원** 효과가 아니라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상양여가 되면 법에 자동적으로 무상양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래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할 때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정해 놓고 사실상 무상양여의 규정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거나, 아니면 그 규정의 취지를 흐릴 만한 규정을 둘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저희들이 최고 8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조성래 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액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전액 지원하게 되면, 무상양여를 해 버리면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성래 위원** 무상양여가 아니고 국비지원의 형태로 가는 것인데, 국비지원을 전액 해 버리면 사실상 무상양여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장 김진영입니다.

지금 저희들 안은 도로 공원 하천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원 비율을 너무 많이 요구할 경우에 상한선을 두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한 60% 정도 공원을 조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부산에서 우리는 70% 하겠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0%는 너희들이 부담해라…… 전 지역의 균형 차원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하천 공원에 소요되는 토지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더 많이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조성래 위원** 이 규정을 나중에 운용할 때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는 하지만 정부 측에 상당한 위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달리, 가사 공원이 60%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60% 중에서 60~70%의 비용만 국비 부담으로 하겠다고 해도 이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예,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율의 관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방부와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래 위원** 어떻든 저희는 그 점을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하천 공원 같은 것은 공익적인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예, 법의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공원 하천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래 위원** 가급적이면 전액 보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예,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성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팀장님, 계속 계시지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도로 공원 하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면서, 그러면 대통령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정부의 약속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어제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환공여구역 전체를 공원으로 쓰겠다고 주장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형평상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을 나오면 그 공원을 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전액 국고지원으로 들어가고, 기본계획에 공원을 더 조성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자치단체도 일부 보조하고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듣지 않았고 ‘도로 공원 하천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비용 중 30% 정도만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를 국고보조로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자체가 해당 미군기지 지역에 조성하는 공원의 면적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지원으로 들어가고요.

○유기준 위원 일정 면적, 그것이 몇 %입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부산을 예로 든다면……

○유기준 위원 부산을 예로 듭시다. 지금 부산 하얏리아부대의 용지가 16만 평인데……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만약에 60% 정도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유기준 위원 지금 100%를 다 하려고 그러합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100%를 다 할 경우에, 부산의 경우에 한해서는 제가 볼 때 70 대 3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준 위원 그 말씀이었어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예.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8항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19항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2항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의사일정 제23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부 제출)

27.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박승환·허태열·엄호성·이인기·이혜훈·정화원·서병수·김희정·박형준·이재웅·권철현·김정훈·김병호·정형근·박근혜·강재섭·김덕룡·최구식·이

성권·김형오·안경률·김무성·정의화·조성래·조경태 의원 발의)

28. 地方自治法 一部改正法律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김양수·허태열·김형오·박형준·권철현·엄호성·안경률·서병수·정형근·김정훈 의원 발의)

(10시59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은 조금 전 간사 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정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이 되어 성안하였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유종상 기획차장 겸 제주특별자치도기획단장을 배석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부산해양특별자치시와 관련해서는 두 간사 간에 합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오늘 이 시점에 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혀 대체토론할 준비라든가 검토보고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의원님의 제안설명만 듣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이것이 긴급하게 올라와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규식 위원 여당 간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늘 기왕에 올라와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하고 성격이 유사한 법안이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적에 같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여야 간사

가 확인을 하고 이것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인기 위원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홍미영 위원 우리 위원들의 경우는 지금 바로 얘기를 듣고……

○최규식 위원 지금 배부되지 않았습니까?

○홍미영 위원 지금 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대체토론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최규식 위원 그러면 상정은 일단 했으니까 토론을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 발언을 이따가 해 주셔 가지고 계류시켰다가 다음 날짜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미영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유기준 의원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제안설명까지는 듣고 하시지요.

○유기준 의원 존경하는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구심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발전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람·물자·정보 교류의 관문이 되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이 되는 도시인 부산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해양산업기지로써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해양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 분권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자치시로 하고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해양항만도시로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재정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필요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올해 4월 6일에 행정자치위에 회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한 7, 8개월 기다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상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조성래 의원님도 발의를 해주셨고, 또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님, 강재섭 원내대표님도 모두 서명을 해 주시면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힘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상정·토론을 거쳐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기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제1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위원 어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지요?

○위원장 이용희 유기준 의원께서 지금……

○홍미영 위원 유기준 의원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 의원님 건이 설사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오늘 상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 쪽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조차도 다음번으로 보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용희 아니, 제안설명까지만 들어 놓고 하시자고요.

○최규식 위원 지금은 제주도 특별법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논의하자는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상정된 제주도 특별법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정리하시자고요.

유기준 의원님, 정부 측 제안설명 부분은 이다음에 듣고 제주도 것만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유기준 의원 제주도는 정부가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러면 제주도 건에 대해서 제1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지요.

○행정자치부제1차관 권오룡 존경하는 행정자

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 내 시·군을 폐지하여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고 하부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 설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주도 내의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그리고 남제주군을 폐지함으로써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고, 둘째 제주도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로서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도 지사가 임명토록 하며, 셋째 시·군의회 폐지에 따른 대표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넷째 시·군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시·군이 행사하던 행정 및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며, 둘째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권자의 연령도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필요한 주민 수를 시·도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구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 넷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수수료 표준요율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및 인사권과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의 선도적 실시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통하여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며,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지속적인 권한 이양과 단계적인 행정규제 완화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로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모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자치재정권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세율조정권을 확대하며, 보통교부세 총액의 1만분의 29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토록 하고, 넷째 교육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며, 다섯째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우선적으로 이관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주민 편의성과 현지성을 제고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부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대상을 초·중등 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안에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신속하고 탄력적인 국토의 이용과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며, 넷째 중앙행정기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오던 주요 환경관리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자원관리종합계획과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인 규제자유화의 시행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개의 법률안은 제주도에 타 시·도와 다른 행정체제와 기능 및 자치권능 등을 부여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권오룡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유기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되는 3건의 법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의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5쪽 중간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법안은 2005년 7월 27일 실시한 제주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 내 시·군을 폐지하여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제주도의 하부행정체제 구축,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설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 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는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시·군의회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바, 이렇게 할 경우 내년 5월 30일에 있을 지방선거 시에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부칙 제1조에서 경과규정의 시행시기를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과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희 위원장, 최규식 간사와 사회교대)

둘째, 이 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안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이 법을 통해서 단일 광역자치체인 제주도를 만들고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폐지된 시·군의 공무원 및 재산을 제주도가 승계하게 한 뒤에 제주특별자치도법안에서 바로 제주도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를 만든 후 종전 제주도의 공무원과 재산을 승계하게 하는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최종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선행조치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체제보다는 통합법률체제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지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자치도로 개편을 하면 2개의 법률을 입법하지 않아도 되므로 입법경제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바,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되더라도 종전의 시·군 단위 지역의 주민 자치 측면이 도외시되지 않

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법안은 총 제17장 362개 조 및 부칙 3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권한 이양과 조직·인사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려는 것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내용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를 고도화하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지방자치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권한 이양과 조직·인사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제주도에 대해서만 특별자치도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전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치역량이 부족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주도가 이양된 권한과 강화된 자치권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치역량과 수용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등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정안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격적인 권

한 이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이와 같은 권한 강화에 부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주민소환제, 직위분류제, 공무원 적격심사제도,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일원화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 제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동 제도들의 도입에 따라 필요한 사전 준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면서 업무만 이관되고 관련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점과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한 안정적이고도 자율적인 재원 확보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안이 고도의 자치 실현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외국자본과 대자본을 위한 특례로 보여질 측면이 있으며, 외자유치 만능론으로 각종 개방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주의 생존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환경정책은 다소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취약한 공공의료분야를 더욱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지적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시장 개방과 외자유치가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각종 규제완화가 난개발을 부추기거나 제주도 내 지가를 상승시켜 합리적인 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바, 그 부작용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해 규제완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이 법안이 모델로 삼았던 포르투갈 마데이라(madeira) 자치주의 경우 막대한 중앙정부 지원금과 각종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제정안과 같은 수준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는 문제로 보이는바, 모델 지역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정교한 계획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최규식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과 관련한 3건의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현송 위원님!

○노현송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주도 국감, 그리고 또 이 법과 관련하여 당정 협의 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각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법의 문제점은 우선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 법이 추진되면서도 역설적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말하자면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2개의 행정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각계의 우려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 절충안으로서 현재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행정시의 시장을 도지사가 출마할 때 시장을 러닝메이트로 같이 출마해서 주민에게 사전 검증도 받고 임명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 국감 시에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해 본 바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당정 협의 시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제2차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투표 시에, 그때 내용이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은 지금 개방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내지는 계약직을 개방형으로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명 절차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노현송 위원** 아니, 이게 주민투표 시의 약속이라고 그러는데 주민투표 시의 약속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를 폐지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를 부활하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는 폐지가 되어 있지요. 다만 선출방식을, 임명하는 것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전에 주민의 동의도 받을 수 있고 검증도 받을 수 있는 형식을 취하자는 건데 이것이 주민투표의 취지와 뭐가 어긋납니까? 전혀 어긋나지가 않지요.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그 당시 주민투표……

○**노현송 위원** 자치단체를 다시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임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당시 주민투표 내용에 행정시장은 지사가 임명하도록 해 가지고 주민투표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민투표 결과하고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현송 위원** 아니, 임명의 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지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기는?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그런데 주민투표 내용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우제항 위원** 이게 공동으로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지사가 되면 이런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공약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노현송 위원** 그렇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내가 도지사로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시장으로 임명하겠다. 주민 여러분……’ 보고서 주민이 평가할 것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도지사로는 훌륭하지만 시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됐다’든지 이런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시장도 적절하게 임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평가를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 의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제1차관 권오룡**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운영을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제1차관 권오룡** 아니요, 그런데……

○**노현송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또 한 가지는요……

○**행정자치부제1차관 권오룡**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것을 법정 사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2차관이 보고드린 대로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규식 간사, 이용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현송 위원** 뭐가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되기는?

○**행정자치부제1차관 권오룡** 주민투표를 할 때에 이 세 가지 사항을 명시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는데, 그 안에 행정시장임명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현송 위원** 임명제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예를 들면 약속한 것보다 더 이하,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의 이하가 되면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 이상을 지켜 주는 결과라고. 임명을 하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겠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찬성하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의사가 더 반영이 되는데 그것을 반대할 주민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주민투표의 취지에 어긋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투표 내용에 2개 시로 통합을 하되 시장은 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닝메이트로 해 버리면 정무직이 되어 버립니다, 임명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투표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성격상.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지요. 우리는 임명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임명

을 하되 미리 사전에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그것은 선출직이 되어 버리지요. 정무직으로, 선출직으로 행정시장이 변해 버립니다. 임명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내용에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논리가 되어 버립니다.

○**노현송 위원** 좌우간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까, 어쨌든 이것은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대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논의의 진척이 없을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예, 설명도 드리고……

○**위원장 이용희** 김정권 위원님!

○**김정권 위원** 제주도에 7월 27일 주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귀포하고 남제주도에서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선 시·군을 폐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 의사와 반하는 것이 통과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또 제가 충청도에 국정감사 갔을 때 보았는데 거기에는 주민투표의 합산 결과가 80% 넘게 통합을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청원군 같은 경우 반대가 50%를 조금 상회해 가지고 통합이 무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하고 청원 쪽의 경우 제주도 쪽이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았다고 느껴지는데 통합으로 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해산되고자 하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의사가 더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에서 위헌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봐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 위헌의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일선 시·군을 폐지해 버리는 이런 행태가, 만약 인천시 같은 경우 인천시 전체의, 시

장이 행정구역을, 인천시에 있는 구를 폐지하고 자 인천시 전체의 요구에 의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해 버린다고 한다면 구청장이나 또 일선 구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게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도만 특별히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도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봐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온 해양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명칭만 해양특별자치시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지 여기에 일선 시·군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주도와 행자부에서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행태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청원의 경우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는데 주민투표 대상이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하고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지역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청원군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한쪽에서 반대를 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 특정 시·군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의 어떤…… 서귀포시라든지 남제주군 그것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가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개념이 개입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전체의 의사가 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혁신안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권 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구조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그렇습니다.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제주도라는 도민 전체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정권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구역 개편안 중

에서 보면 비례대표를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비례대표는 1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만 특별히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볼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그것은 시·군 의회를 없앴기 때문에, 도의회만 남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역주의라든지…… 제주도의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외부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례대표제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에도 20%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20% 이상으로 했습니다.

○**김정권 위원** 이것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다시 흡수한다든지 이런 문제 등등을 본다면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되었을 때 부처 협의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순 위원** 제주도를 지금의 행정체계와는 다른 체계와 내용으로 특별한 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 법은 크게 의료·교육·복지 그리고 행정체계 개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의료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의 영리법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병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문제는 없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려는 광고 및 환자 알선·유인 허용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이 허용됨으로써 인해서 의료기관이 공공성보다는 영리 위주의 의료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문에서도 교육을 제주 발전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삼고는 있지만 외국의 유명대학

이 제주도에 올 수 있다라는 것 말고는 그것이 갖는 제주도에의 특별한 경제적 효과나 교육에 미치는, 특히나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교육기관이 내국인 입학 확대하게 되는 것은 외국 교육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데 외국의 유명대학이 들어왔다고 해도 내국인들이 대다수 입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양극화가 되지 않는 공교육 체계에 맞지 않는, 오히려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과 교육과정 편성이 학교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런 특별한 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있고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은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공공복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것 또한 빈곤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 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체계 및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너무 막대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주민투표 과정에서 보듯이 주민이 관여하고 감시할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특별자치도의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계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각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사숙고된 상태에서 법이 통과됨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

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도 이 법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한 이후에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제안을 여러 위원들께 드리고 ‘충분한 검토를 합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좋은 말씀입니다.

정진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석 위원** 본 위원은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선진적인 분권모델 실현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총론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만을 대비시키기에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측면이 경시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관례대로라면 정부 입법절차를 보면 행정절차법에도 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차관님, 이것이 입법예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었지요?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졌어요?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유종상** 기획차장입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11일간 했습니다.

○**정진석 위원** 통상 행정절차법에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유종상** 법에서는 이것이 임의적인 조항이나 또는 의무적 조항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는 임의적 조항으로 지금 법제처의 의견도 받았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소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투표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현지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사안이고 여러 가지 부처 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의견 조율이 사실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자꾸 전격적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하다가도 또 다른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그 후유증을 낳게 되면 그것을 정부에서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일수록 좀 찬찬하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법안을 성안해서 21일부터 27일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하고 바로 입법예고를 한 9일만에 거쳐서 하고 법제처 심사가 15, 16일, 다음날 차관회의, 다음다음날 국무회의, 다음날 국회 제출, 이런 식의 정부 입법 처리사례를 제 의정 경험으로는 본적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매우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서두를 만한 어떤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유종상** 저희는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계 부처 협의기간이 마치 입법예고 이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제안은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고 관계 부처 내에서의 정식 협의는 지난 8월부터 충분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1급 회의, 차관회의를 수차 했고 또 지원위원회 성격의 전체적인 추진위원회가 지금 총리실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했고 또 주요현안에 관해서는 관계 장관회의를 따로 했고 등 해서 관계 부처 회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창 위원** 우선 본 위원은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큰 변화고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관심이 크고 또 정말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도 이안을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주의 특성을 감안한 지방분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개발하는 데 너무 치중한 측면, 이 둘이 과연 적절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타협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것의 취지는 지금 현재 그 산하에 있는 자치단체를 없앤다고 하는 형식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시를 그대로 존속시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상 지금 자치권만 시에 없을 뿐이지 시도 그대로 있고 시장도 그대로 있고 읍·면·동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과연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뭐냐, 지방의회 하나 없어지는 것인

데 지방의회 없어지는 것은 또 도에다가 지방의회 의원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하는 체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그냥 몰아붙이기식으로 할 입법은 아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성격을 분명히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타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법상으로 이것이 세 가지 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법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기본법으로 보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데 어느 것을 기본법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위원님, 원칙으로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하고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하고 2개의 법안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재창 위원 바로 그런 점에서 내년 선거를 의식을 하다 보니까 다소 졸속으로다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1년 안에 꼭 해야 된다, 지난 7월에 해서 내년 7월에 시행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내년 7월에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전적으로 그쪽에 지원해주고 하는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하고, 지방자치의 특례 이런 것인데 이것은 현행 지방자치제를 그대로 두고라도 잠정적으로 그 두 가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손대는 기본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그것에 바탕을 해서 제주도에 어떤 행정체제를

갖추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와 별도로 자유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특별지원에 관한 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해서 해야 앞뒤가 맞는데 보면 한두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법과의 관계도 지금 이것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기본법이나, 그렇지 않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근거를 두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 자치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요?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지방자치법을 이번에 저희들이 고치는 것은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재창 위원 글썽, 그것은 알겠어요. 자치법에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부 제주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는 제주하고 관계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단일 법안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셋을 같이 상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욱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격이 특별자치도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위도 부여하고 특례도 인정하고 이렇게 기본법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법에도 폐지한, 엄격히 얘기하면 서귀포시다, 남제주군이다 폐지하는 법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는 법 체계가 아니잖아요? 여기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법이 앞으로 기본법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자치도를 규정한다면 폐지하는 것도 지방자치법에서 나와야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행정체제 여기에도 부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규

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법이 기본이고 어느 것이 특별법인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앞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뒤에 의해서 규정할 거냐, 여기에 상세하게 또 많이 규정해 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것이 지방자치제 실시되기 바로 전에 소위 준자치체라고 그래서 도시의 구에 대해서 부분적인 자치권을 주고, 그러나 완전 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적인 지위에서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시라고 하는 것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마치 일반 시의 구청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명을 지사가 한다는 그런 것만 규정했는데 실제로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 지위가 자치단체나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 체계가.

그러면 그것이 제주도에 대해서 지방 분권 차원에서 또 개발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시도했던 그런 안이나 그런 점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주민투표를 거쳤다고 하지만 주민투표율이 36.7%밖에 안 되고 찬성률도 57%밖에 안 되는 가운데 없어지는 시·군에서는 사실상 반대한 것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시한을 두고 바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심의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루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우선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 답변하시지요.

○강창일 위원 공청회를 정식으로 동의하지요.

제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화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유기준 위원님!

○유기준 위원 대체토론을 아직 안 마친 것 같은데요.

○강창일 위원 지금 의결정족수 문제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공청회 문제가 나와서 정식으로 한 다음에 대체토론을 충분히 하자고요.

○유기준 위원 국회가 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는데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표결을 하든지 의결을 하든지 해야 마땅한 건데 너무 서두르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창일 위원 위원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서는 대체토론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대체토론하면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긴급 의사 진행발언을 얻어서 공청회를 할 것을 먼저 정식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계속 대체토론하자는 얘기지요.

○유기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시되, 공청회를 할지 안 할지 부분은 토론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면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길게 설명할 것도 아닌데……

○최규식 위원 다들 나가시려고 그래서 의결이 오늘 안 되어 버리니까……

○유기준 위원 곧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기원하는 바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리적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도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거는 이 주민투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지요?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선고가 곧 있을 예정이었는데 언제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선고가 곧 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고요, 현재 가처분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 물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해 가지고 그로 인해 정지되고 그러지는 않았습

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12월 22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저희들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도 없고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날지,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발의해 가지고 일선 군의,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선고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법안을 처리하든지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물론 원칙으로 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권한쟁의심판 들어오고 나서 법률적인 전문가 자문도 내부적으로 다 받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법을 그대로 추진해도 문제없겠다고 판단해서……

○**유기준 위원** 그거야 행정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이전의 신행정수도 관련법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면서 있었던 모든 조치들이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 선고를 바로 오늘내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행정자치부제2차관 문원경** 헌법재판소 결정 문제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강창일 위원** 제가 정식 동의한 문제……

○**위원장 이용희**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재창 위원님, 간사 간에 아마 12월 6일 오후 2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 하기로 대충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공청회를 한 다음에 다시 즉각 회의를 열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재창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영순 위원님!

○**이영순 위원** 저도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런 식의 공청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좀더 논의를 충분히 하기 위한 공청회를 제안드린 거였거든요.

○**강창일 위원** 공청회가 논의하자는 얘기 아닙

니까?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 보시면요. 교육부 복지부 문광부, 여러 소관 상임위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상임위 검토의견을 듣고 나서 공청회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강창일 위원** 법 안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4, 5년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영순 위원** 왜 4, 5년 걸립니까?

○**강창일 위원** 우리 위원회가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되 관련된 상임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공청회를 하자는 거예요.

○**강창일 위원** 언제 하자는 얘기예요?

○**이영순 위원** 언제까지 날짜를 잡는데, 연내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의견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

○**강창일 위원**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래요?

○**이영순 위원** 저는 관련된 상임위 의견을 들어서 하자, 지금 보건복지부도 이 검토의견을 내기 위해서 공청회까지도 하자고 하는 마당에 행자위가 그 의견을 듣지도 않고 공청회부터 먼저 한다는 것입니까?

○**강창일 위원** 상임위의 첨부의견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달라 해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5일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영순 위원** 5일 내에 다 검토의견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청회 날짜를 촉박하게 잡지 말자고요.

○**강창일 위원** 촉박하게 잡지 말자는 얘기는 누가 촉박하다고 합니까? 뭐가 촉박하고 될 시간이 많은 것입니까? 그러면 한 달 이후에 하자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이영순 위원** 다음 주 화요일이 촉박하지 않은 것입니까?

○**강창일 위원** 촉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임의적인 판단이라고……

○**이영순 위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창 위원** 지금 6일로 잠정 말씀들이 오고 갔던 모양인데 하여튼 좀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할게요. 어차피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간사 간에 대충 합의한 대로 12월 6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위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난상토론을 해 보시자고요.

안 해 주려면 몰라도 해 준다면 굳이 우리가 시간 끌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의사 교환을 해 보시자고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 위원 해 주는 것을 전제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안 해 주려면 모를까 해 줄 거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의견 수렴을 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안 하게 되면 안 하더라도 하게 되면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뭐 나쁠 것이 있어요.

○이영순 위원 5일이라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날짜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끼든 말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쓸 것 없어요.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6일이라 하더라도 휴일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데 대한 의견을 여기서 제한된 시간 내에 토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히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희 충분하게 논의하시자고요, 강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제 실수인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의사 일정 제16항을 빠뜨려 놓고 지나갔습니다. 의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진술인 선정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은 분들을 많이 선정해 가지고 공청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청회 끝난 다음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창일	고홍길	권오을	김기춘
김무성	김정권	노현송	박기춘
심재덕	양형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인태	이영순	이용희
이인기	이재창	정진석	정진섭
조성래	최규식	홍미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김종현

○정부측 참석자

행정자치부			
제 1 차 관	권오을	류경호	
제 2 차 관	문원식	양익인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정부혁신본부장	최양익		
지방행정본부장	권혁인		
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지방세계관	김대영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조창현		
사무처장	정택현		
정책홍보관리관	김명식		
인사정책국장	정진철		
인력개발국장	안양호		

고위공무원단체도 실무추진단장 경찰청	정	하	경
청장	허	준	영
경무기획국장	홍	영	기
생활안전국장	김	용	화
수사국장	윤	시	영
경비국장	김	대	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	기	수
기획관리관	남	래	진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제주특별 자치도추진기획단장	유	종	상